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지침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사범계열 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사범계열인 기독교교육과, 유아교육과 와 교직과정이 설치된 승인된 신학과, 보육학과의 학생으로서 졸업 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및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 중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3조** (이수신청, 선발 및 승인) 사범계열(기독교교육과, 유아교육과) 학생을 제외한 학생은 제2학년중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소정양식)를 지도교수 및 학과장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입학정원 대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신청자의 인, 적성 및 성적, 면접을 통해 학과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2013.10.22.개정)
- 제4조** (이수기간) 교직과정은 제2학년부터 최종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 (교직과목) 교직과정이수자는 교직과목을 별표1과 같이 이수해야 한다.(2008.11.12개정)
- 제6조** (전공 및 기본이수 과목) ①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전공 및 기본이수영역과목을 (별표 2)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2008.11.12개정)
②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과과정을 변경할 때는 기본이수영역의 과목을 확인하여야 하고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대체과목을 지정해야 한다.
- 제7조** (복수전공) 기독교교육과, 유아교육과, 신학과 교직이수예정자, 보육학과 교직이수 예정자는 복수전공으로 타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 제8조** (학기당 수강학점수) 교직과목은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가능 학점인 21학점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 (이수인정) 교직과정이수자는 전공과목 평균성적 B-(80점)이상과 교직과목 평균 성적 B-(80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제10조** (편입학자의 이수) 제3학년의 편입학자로서 전적 대학교에서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고 교직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한 자는 해당학과의 교직선발정원에 여석이 있을 시 계속 이수할 수 있다.
- 제11조** (교육실습) 교직과정이수자는 소정기간의 교육실습을 하여야 하며 실습을 받은 자에 한해서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1회에 한한다.
- 제12조** (교직과정 운영) 교직과정 운영 및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실습생이 부담하는 실습비로 충당한다.
- 제13조** (기타사항)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교육부령 [교원자격검정령] 및 본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008.11.12개정)

부 칙

1. 이 지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지침은 200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지침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지침의 개폐) 이 지침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개정 한다.

[별표 1]

교직과정 이수 교과과정표
-2008학년도(2010학년도 편입자) 입학자까지-

구분 영역	교과목명	학점	비고 (대체과목)
교 직 이 론	교육학개론	2	복수전공 시 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직이론은 제2전 공에서 모두 인정 함
	교육사회학	2	
	교육심리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	
교과 교육	교과교육론	2	복수전공 시 제2전공의 교 과교육영역 과목 이수(필 수)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	
교육 실습	교육실습	2	

-2009학년도 이후(2011학년도 편입자) 입학자부터-

구분 영역	교과목명	학점	비고 (대체과목)
교 직 이 론	교육학개론	2	복수전공 시 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직이론, 교직소 양은 제2전공에서 모두 인정 함
	교육사회학	2	
	교육심리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	
	생활지도	2	
(상기 과목 중 7개과목이상 14학점이상)			
교 직 소 양	교직실무	2	
	특수교육학개론	2	
교 육 실 습	학교현장실습	2	
	교육봉사활동	2	

[별표 2]

표시 과목별 전공 및 기본이수과목 일람표

학과	표시과목	전공 및 기본 이수과목 해당과목		이수기준	대체과목	비고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종교 (08년이전 신입학, 2010년이전 편입학)	기본 이수 과목	종교교육론, 종교학개론, 종교현상학, 종교철학, 한 국종교, 종교사회학(또는 종교인류학), 종교심리학, 세계종교(또는 종교사, 또 는 비교종교학), 현대종교, 종교와과학, 종교학사,	- 전공과목(교과과 정이 정한) 42학점 이상 이수(교직과 목은 전공과목에 해당되지 않음) - 기본이수과목 5 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이수	종교학개론 -> 조직신학 종교사->교 회사	복수전공자 는 제2전공 의 교과교 육과목 포 함 46학점 이수
	종교 (09년이후 신입학, 2011이후 편입학)	기본 이수 과목	종교교육론, 종교학개론, 종교현상학, 종교철학, 한 국종교, 종교사회학(또는 종교인류학), 종교심리학, 세계종교(또는 종교사, 또 는 비교종교학), 현대종교, 종교와과학, 종교학사, 종 교와 문화	- 전공과목(교과과 정이 정한) 42학점 이상 이수(교직과 목은 전공과목에 해당되지 않음) - 기본이수과목 7 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	종교교육론 -> 기독교교육 개론	복 수 전 공 시 제2전공 도 제1전공 과 동일한 기준 적용
		교과 교육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교육통계 및 평가	교과교육영역 3과목 이상, 8학점 이상 이수		복 수 전 공 시 제2전공 도 제1전공 과 동일한 기준 적용
보육학과 유아 교육과	유치원 (08년이전 신입학, 2010년이전 편입학)	기본 이수 과목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관찰및 실습,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 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 육, 유아동작교육, 부모교 육,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 전공과목(교과과 정이 정한) 42학점 이상 이수(교직과 목은 전공과목에 해당되지 않음) - 기본이수과목 5 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이수		복수전공자 는 제2전공 의 교과교 육과목 포 함 46학점 이수
		기본 이수 과목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관찰및 실습,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 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 육, 유아동작교육, 유아교 사론, 유아건강교육 , 유아 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 지, 부모교육	- 전공과목(교과과 정이 정한) 42학점 이상 이수(교직과 목은 전공과목에 해당되지 않음) - 기본이수과목 7 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		복 수 전 공 시 제2전공 도 제1전공 과 동일한 기준 적용
	교과 교육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교육통계 및 평가	교과교육영역 3과목 이상, 8학점 이상 이수		복 수 전 공 시 제2전공 도 제1전공 과 동일한 기준 적용	

※ 교과과정상 교직과목이 전공과목으로 개설 된 경우 졸업심사에서는 전공과목으로 인정 하나, 교원자격 심사에서는 전공과목으로 인정 하지 않음

※ 복수전공의 경우 졸업심사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1전공, 제2전공 모두 “전공 및 기본이수과목

(별표2)를 충족 해야 함